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양도의 제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사업구역별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수 있음(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수 있다.